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12. 13 선고 2024가단653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은철

변 론 종 결 2024. 11. 8.

판 결 선 고 2024. 12. 13.

주 문

1. 피고와 C(D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4. 3. 2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4. 4.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접수 제4177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이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변론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민사소송법 제98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원

별지